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행사 사업보조(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의미하는 바,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 행사 지원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직접 집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